

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조은희의원 · 이정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90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0. 15.

발 의 자 : 조은희 · 이정문 · 노종면
신성범 · 이성권 · 정준호
김용태 · 이인선 · 진선미
한지아 · 임오경 · 배현진
김승수 · 정연욱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전통사찰 내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이 일정 요건을 갖추고 「건축법」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며, 다른 법령에 따른 과태료,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사용승인의 요건으로 「건축법」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,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한 건축물이 오히려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있고, 이 요건이 산지 · 농지 · 국토계획 · 개발제한구역 등 관련 법령 전반으로 확대 해석되어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 간 이견으로 사용승인이 지연되는 등 특례 도입의 입법취지가 형해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「건축법」 등 관련 법령 적합 요건을 삭제하고, 이 특례에 따

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등재에 관하여는 제10조의3 규정을 「건축법」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산지관리법」, 「농지법」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한편, 건축위원회가 전통사찰의 역사적·문화적 특성과 건축물의 사용실태를 고려하여 안전상 명백한 위험이 있는지를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며, 특례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전통사찰 내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등재를 원활하게 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의3 및 법률 제20288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).

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3제2항 중 “건축물이 「건축법」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,”
를 “건축물이”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
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등재에 관하여는
「건축법」, 「자연공원법」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,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산지관리법」, 「산림자원
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
관한 특별조치법」 및 「농지법」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
다.

③ 건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할 때 전통사찰의 역사적·문화
적 특성과 건축물의 사용실태를 고려하여 안전상 명백한 위험이 있
는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법률 제20288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부칙 제2조 본문 중 “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”을 “2029년 12월 31일까
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